

무배당 Top3 건강보험 II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Top3 건강보험 II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24년 3월 29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곽상현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Top3 건강보험 II

1. 상품명칭 및 세목

명 칭	세 목	
무배당①) Top3②)건강보험 II	2 대질병보장형	순수보장형
		분할페이백형
		20년 일시페이백형
	암보장형	순수보장형
		분할페이백형
		20년 일시페이백형
	3 대질병보장형	순수보장형
		분할페이백형
		20년 일시페이백형

※ 동 상품은 상품명칭 중 ①) 및 ②)안에는 특정단체, 특정직업군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①) 및 ②)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종목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자	여자	
2 대 질병 보장형	순수보장형	110 세만기	일시납, 5/10/15/20 년납	0 세~70 세	0 세~70 세	일시납, 월납,연납
	분할페이백형	110 세만기	10/15/20 년납	0 세~70 세	0 세~70 세	월납,연납
	20년 일시페이백형	110 세만기 90 세만기	일시납	0 세~70 세	0 세~70 세	일시납
5/10/15/20 년납			0 세~65 세	0 세~67 세	월납,연납	
암 보장형	순수보장형	110 세만기	일시납, 5/10/15/20 년납	0 세~70 세	0 세~70 세	일시납, 월납,연납
	분할페이백형	110 세만기	10/15/20 년납	0 세~70 세	0 세~70 세	월납,연납
	20년 일시페이백형	110 세만기 90 세만기	일시납	0 세~70 세	0 세~70 세	일시납
5/10/15/20 년납			0 세~53 세	0 세~62 세	월납,연납	
3 대 질병 보장형	순수보장형	110 세만기	일시납, 5/10/15/20 년납	0 세~70 세	0 세~70 세	일시납, 월납,연납
	분할페이백형	110 세만기	10/15/20 년납	0 세~70 세	0 세~70 세	월납,연납
	20년 일시페이백형	110 세만기 90 세만기	일시납	0 세~70 세	0 세~70 세	일시납
5/10/15/20 년납			0 세~52 세	0 세~60 세	월납,연납	

3. 최대 보험가입금액(최초 가입시)

5,000 만원

4.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영업보험료로 한다.

7.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자동이체할인

회사는 보험료가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하여 납부되는 경우에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영수한다. 다만, 초회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한다.

나. 내리사랑할인

(1) 회사는 계약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해당계약의 피보험자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영수한다. 다만, 초회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한다.

(2) 계약자는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신청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의 납입보험료부터 할인을 적용한다.

(3) 내리사랑할인을 적용 받는 중 계약자 변경 등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가 위 (1)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 납입보험료부터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8.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당월분 포함)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할인하며, 최대 12개월분(당월분 포함)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9.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10.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회사가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1.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4. 자동송금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자동송금서비스란, 분할페이백형, 20년 일시페이백형 선택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건강관리자금(중도급부금) 또는 해당되는 일정 시점에 발생하는 일시자금(중도급부금)을 계약을 체결할 때 신청한 계좌로 자동송금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별첨 제 1 호의 자동송금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15. 보험가입금액의 자동증액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분할페이백형 또는 20년 일시페이백형을 선택한 경우, 회사는 건강관리자금(중도급부금) 또는 일시자금(중도급부금)의 최종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에 건강관리자금(중도급부금) 또는 일시자금(중도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로 보험가입금액을 자동 증액한다. 다만, 발생한 이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증액하지 않는다.

나. 자동증액 되는 보험가입금액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이 자동증액 되었을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을 계약자에게 안내한다.

16.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다.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1)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 4-14 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한다.
- (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의 99%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라. 상품 설명 안내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판매자료(약관, 안내장 등)의 상품명 하단에 '이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연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한다.
- (2) 회사는 상품설명서에 아래와 같은 안내사항을 포함한다.
 - 이 보험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연금 또는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지 않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건강관리자금(중도급부금) 및 일시자금(중도급부금)은 지급사유 발생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시에만 지급되며, 그 이전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되고 건강관리자금(중도급부금) 및 일시자금(중도급부금)은 지급되지 않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별첨 제 2 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3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4 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 청약서의 서식